

○○초 급식식재료납품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0나○○○○○ [2심]	사건유형	계약관련
원고	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[2심]2021. 8. 24. 항소기각	비고	[1심]2020. 9. 9. 원고패
사건개요	<p>○ 원고는 ◇◇초와 2019. 5월 공산품류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, ◇◇초는 ‘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’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이유(현품사양 위반)로 2019. 5. 29.자로 계약을 해지하였고, 원고가 학교급식조달시스템 미등록차량으로 배송한 사실을 학교급식조달시스템에 신고하여 원고는 시스템 사용제한 처분을 받음.</p> <p>○ 원고는 ◇◇초의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한 납품대금 및 ◇◇초의 부당한 신고행위로 인한 일실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.</p>		
주 문	<p>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		
판결이유	<p>○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는 ◇◇초의 현품설명서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강제거래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, 계약의 체결 경위, 학교급식법의 특성 및 내용, 학교급식 식재료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, ◇◇초가 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을 요구한 것은 학교급식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한 이유가 있고, 공정거래법이 정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. - 원고가 ◇◇초의 현품설명서와 다른 고춧가루, 새우젓, 콩기름을 납품하고 현품설명서에 따른 현미유를 전혀 납품하지 않았으며, 냉동 급식재료를 일반승용차로 납품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음.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급식재료의 품질과 성분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,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급식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반복하여 계약에서 정한 급식재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다른 급식재료 공급함으로써 ◇◇초의 급식 실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 볼 것임. - ◇◇초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, 심의 대신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심의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. - ◇◇초의 급식조달시스템 신고행위는 한국△△△△△△△△공사의 배송차량전수등록제도 시행 안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,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움. 		